

정관(定款)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정 관 2022년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단체명은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이하 “협회” 라고 한다)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Dokdo Association” 로 하고 약칭은 “KDA”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활동에 앞장서며 독도 등 해양영토 주권강화를 위한 포럼 및 해양환경, 해양문화,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한 국내·국외 홍보사업과 국내 및 재외국민의 독도탐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장차로 5번길 33, 라펠리체 704호에 두며, 주사무소 변경은 총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설치 시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독도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 계몽 및 포럼, 교육사업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학술 연구 사업
3. 국내외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및 체계적 교육사업
4. 해양문화, 해양역사, 해양생태 보호를 위한 독도 등 탐방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협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④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정수) 임원의 종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등기이사(회장포함) 5인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협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회장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 궐위 시 이사회를 통해 재 선출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총장)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고령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임원회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 하고 문서·이메일·문자·유선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2조(회원의 결의권)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위임장 포함)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 사 회 -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포함 이사 5명으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이사회의 소집은 서면·문자·유선으로 한다.

⑤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 이사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심의·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임원 분담금
5. 기타

②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연간 기부 받은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④협회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내규에 따른다.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12월중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협회는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포함)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2조(내규제정 및 시행)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내규로 정한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2022년 등기이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명날인
1	전일재	611217-1063424	경기도 김포시 장차로5번길33, 루페스타 라펠리체 704호	
2	이용웅	680422-10639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336, 102동305호	
3	심영수	640603-114373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64번길7 영남탑스빌아파트 116동 1601호	
4	장성수	590519-1046518	서울 강남구 선릉로 90길56,709호	
5	이동근	690929-14467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27번길80 신동백롯데캐슬 103동2702호	